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八十
----------	----

제출년월일 : 1999. 12.

제출자 : 평창군수

1. 개정사유

- 가. 행정규제정비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기울이기 위함.
- 나.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편의제공 및 법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실질적으로 적용사례가 없는 규정과 대법원판례로 명시된 규정에 대한 폐지를 통한 법규의 신뢰도 제고(안 제22조제2항, 안 제25조제2항)
- 나. 상위 근거법령 관련 조항등의 정정을 통한 법규의 정확성 제고
(안 제1조, 안 제24조제3항)
- 다. 현행 법규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항목에 대한 정비를 통해 수도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안 제22조제2항, 안 제24조제1항, 안 제25조제2항, 안 제27조제2항, 안 제30조제3항)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별첨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3. 관계부처승인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를 “제23조”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급수공사신청자가 필요로 할 경우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은 관급자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2항 중 “군수가 정한다”를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정하되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를 “중지하고자 할 때”로 한다.

제2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 중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를 “기본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제3호 중 “제1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연대책임을 진다”를 “신의성실의 책임을 진다”로 한다.

제2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업종의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량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30조제3항중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3조-----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생략)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7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필요로 할 경우 사급자재를 사용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은 관급자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생략) 1. (생략)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3. (생략) ② ~ ③ (생략)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생략)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정하여 겸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생략)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 7. (생략) ② (생략)	제18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중지하고자 할 때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령 발췌 -

수 도 법

제2조(責務)

-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하 "수돗물"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供給規程)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허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8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